

2024년 만화출판 지원사업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24년 만화출판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4. 8. 14.
재단법인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I 사업목적

- 지역 만화 및 웹툰 창작자의 웹툰 제작 환경 조성
- 지역 만화 및 웹툰 산업 활성화를 통한 작가 경쟁력 확보 및 제작여건 강화

II 사업개요

- 공고명: 만화출판 지원사업
- 사업기간: 2024. 8. ~ 11.
- 지원대상
 -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창작자(예비 창작자 포함)
 -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사업자
 - ※ 단,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업 명기 필수
 - ※ 저작권 보유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 완료된 자
- 지원규모: 지원과제당 8,000,000원, 총 2건(총 16,000,000원)
- 지원내용: 우수 만화(그래픽노블 포함) 및 웹툰의 출판 지원

Ⅲ 사업 세부내역

□ 지원대상

-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창작자(예비 창작자 포함)

【 지원 제외대상 】

- ✓ 신청과제와 동일한 산출물로 정부(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)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자
- ✓ 정부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“참여제한” 조치를 당한 자 (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)
- ✓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
- ✓ 기존 매체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는 콘텐츠 또는 기획안을 재제작하는 자
- ✓ 과도한 폭력묘사·언어, 선정성 등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제작하는 자
- ✓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자
- ✓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
- ✓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-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사업자

※ 단,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업 명기 필수

※ 저작권 보유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 완료된 자

【 지원 제외대상 】

- ✓ 신청과제와 동일한 산출물로 정부(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사업대행기관 등)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사업자
- ✓ 정부,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“참여제한” 조치를 당한 사업자 (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혹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)
- ✓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업자
- ✓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업자
- ✓ 기존 매체를 통해 발표된 적이 있는 콘텐츠 또는 기획안을 재제작하는 사업자
- ✓ 과도한 폭력묘사·언어, 선정성 등 성인등급에 해당하는 창작물을 제작하는 사업자
- ✓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
- ✓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자
- ✓ 기타 원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

□ 지원내용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|--|
| 지원내용 | ◦ 우수 만화(그래픽노블 포함) 및 웹툰의 출판 지원 |
| 지원주제 | ◦ 자유주제 |
| 지원장르 | ◦ 제한없음 (다만, 성인물, BL/GL, 범죄물, 폭력물 등 제외) |
| 지원규모 | ◦ 총 2개 과제 |
| 지원금액 | ◦ 과제당 8백만원(부가세 제외, 100% 출판비용 편성) |
| 과제수행기간 | ◦ 협약체결일로부터 ~ 11.28. |
| 과제 결과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유통 가능한 단행본으로 편집이 완성된 샘플도서 1종 이상(표지 포함) 10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가능한 도서 500권 이상 출판 - 도서의 최소 분량은 만화원고 120쪽 이상(도서크기 128mm X 188mm 이상) - ISBN 발급 필수 및 유통계약서 ◦ 최종결과보고서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작권 등록 증빙서류 -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1부 |
| 지원조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국내외 미출판 창작원고 보유작가 또는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약종료일(2024.11.28.)까지 단행본으로 출판이 가능한 원고 및 저작권을 보유한 작가 - 사업자의 경우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이 완료된 자 ◦ 협약만료일까지 과제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◦ 지원금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보험기간: 협약기간+60일) ◦ 출판 시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, 제주웹툰캠퍼스 제작 지원 표기 필수 ◦ 선정제외조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고일 이전에 도서(전자책 포함)로 발간된 경우 - 공고일 이전에 ISBN을 발급받은 경우 - 기발행된 도서의 수정, 수정증보, 개정사항인 경우 - 저작권 침해 등 명백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(협약체결 후라도 협약해제) - 기타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진흥원이 판단하는 경우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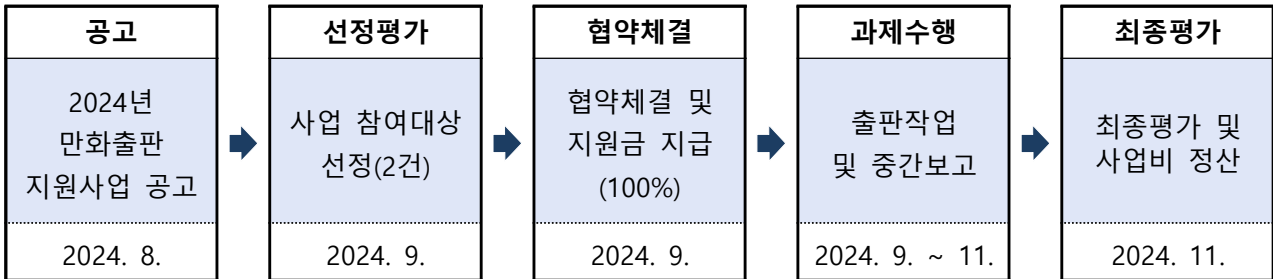
□ 유의사항

| 구분 | 내용 |
|------|---|
| 사업대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창작자(예비 창작자 포함) ◦ 공고일 전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국내외 미 출판 창작 원고를 보유한 사업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출판업 명기 필수 ※ 저작권 보유 작가와 출판관련 계약 완료된 자 |

| 구분 | 내용 |
|------|--|
| 서류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동일 과제로 진흥원 및 타기관 지원사업에 동시 지원할 수 없음 ◦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과제는 신규 콘텐츠의 기획안에 한함 ◦ 접수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◦ 서류는 이메일 제출만 가능함(이메일 제출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) ◦ 과제 신청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◦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,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하며 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◦ 지원 대상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, 대본(구성안)저작권 등을 침해하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지원자 및 지원사업자에게 있음 ◦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되고, 진흥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◦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증빙하여야 하며 기타 불임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짐 ◦ 제출서류 허위기재 및 증빙자료 미비시 지원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|
| 권리관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적재산권 소유는 작가(또는 사업자)에게 귀속함 ◦ 다만,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홍보 및 프로모션 또는 공익목적의 비상업적 활용 권한을 인정함 |
| 과제수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급에 관한 비용 일체는 선정자 부담으로 함 ◦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 후 지원금 100%를 지급하며 사용 사업비의 사후 정산을 실시함(100% 출판비용 집행, 부가세 제외) ◦ 과제 수행 중 1회 중간보고(서면)를 통해 제작 진행상황을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함 ◦ 진흥원은 과제 추진상황 확인을 위하여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◦ 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◦ 작품 규격에 현저히 미달된 과제는 작품 완성도와 상관없이 '실패' 판정함 ◦ '실패'로 평가받은 과제는 기지급된 지원금 모두 환수 조치할 수 있음 ◦ 협약 만료 이후에도 개발된 출판물 판매를 위한 홍보 프로모션 및 매체 투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함 ◦ 사업 종료 후에도 실적, 매출, 사업화 성과 등의 자료 제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◦ 기타 과제 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|
| 기타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사업내용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◦ 심사기준 미달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◦ 선정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선정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, 예비선정순번은 공개하지 않음 ◦ 신청자는 본 공고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격요건 미충족, 허위기재, 증빙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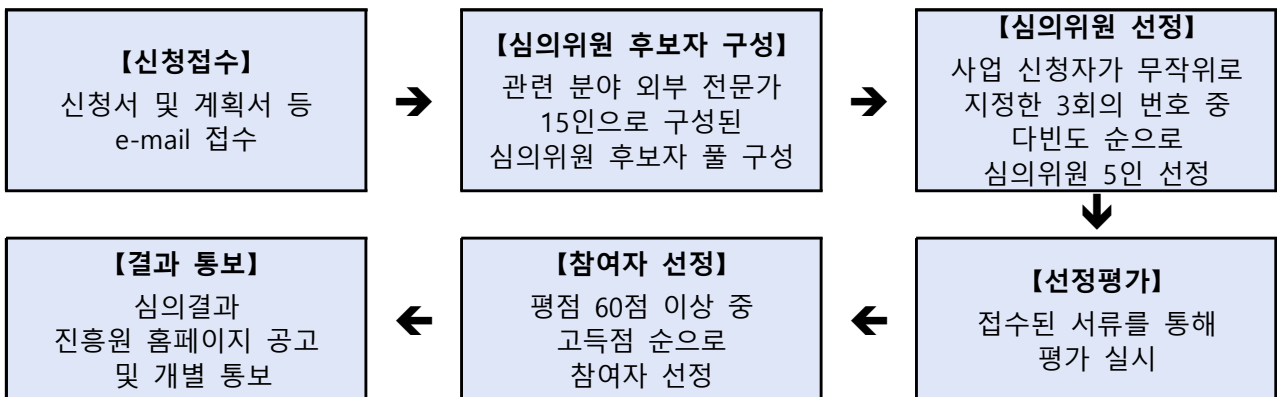
IV 추진일정 및 절차

□ 추진일정



※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

□ 선정절차



※ 심사기준 미달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| 구분 | 평가항목 | 배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작품성(30) | ◦ 제작 원고의 우수성 | 15 |
| | ◦ 제작 원고의 차별성(소재, 줄거리 등) | 15 |
| 기획성(40) | ◦ 출판 기획 능력의 우수성 | 15 |
| | ◦ 출판 계획 일정의 적절성 | 15 |
| | ◦ 사업수행자의 제작 경험과 역량의 우수성 | 10 |
| 사업성(30) | ◦ 출판물의 유통가능성 | 15 |
| | ◦ 출판물의 홍보·마케팅 계획 | 15 |
| 합 계 | | 100 |
| 우대가점(3) | ◦ 지원 과제의 주제가 제주 소재 작품인 자 | 3 |
| 총 합 계 | | 103 |

V

신청방법

- 공고기간: 2024. 8. 14.(수) ~ 2024. 8. 28.(수)
- 접수기간: 2024. 8. 14.(수) ~ 2024. 8. 28.(수) 18:00까지
- 접수방법: 이메일 제출(hee@ofjeju.kr)
 - 메일제목: 만화출판지원_○○○(성명)
 - 제출형식: 각 서류를 PDF로 변환하여 압축하여 제출(서명 또는 날인 필수)
 - 제출서식: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(<http://www.ofjeju.kr>) 또는 제주웹툰캠퍼스(<http://www.webtoonjeju.kr>) 홈페이지 - 알림마당(정보마당) - 공지사항

제출서류

| 연번 | 서류명 | 비고 |
|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사업 신청서 | [서식1] |
| 2 | 사업 수행계획서 | [서식2] |
| 3 |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[서식3] |
| 4 |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| [서식4] |
| 5 | 심의위원 추천표 | [서식5] |
| 6 | 출간용 원고 | PDF 양식 제출 |
| 7 | 출판계약서, 출판저작권계약서 등 원작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| 자유양식 |
| 8 | 주민등록초본 | 공고일 이후 발급본 |
| 9 | (사업자) 사업자등록증 | 공고일 이후 발급본 |
| 10 | 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| 국세, 지방세 각 1부, 공고일 이후 발급본 |
| 11 | (사업자) 4대보험 완납증명서 | 공고일 이후 발급본 |
| 참고사항 | ※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 - 발급형태: 선택발급 - 표시할 정보: 현주소의 발생일 - 현주소의 발생일 이외 개인 정보 모두 미표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) | |

문의처

| 담당부서 | E-Mail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
|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팀 | ✉ hee@ofjeju.kr | ☎ 064)735-0614 |